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4일 02시 14분



# 목차

목차	2
보건소 소식	3
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	3

##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

2022.02.24 조회수 361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정기남 연락처 061-659-4182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(제23조 관련)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.

### < 해당시험 >

#### ○ 시험명

- '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'
- '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'

#### ○ 시험일시: 2022.2.26.(토), 10:00 ~ 17:10

○ 대상자: 입원치료·자가치료·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·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

○ 외출시간: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(이동시간 포함)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

#### ○ 외출시 주의사항

- 이동방법: 도보, 자차(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), 방역택시 등(대중 교통 이용 금지)
- 주의사항: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 상시 착용,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, 시험장소로 직행,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

※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

※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,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

 220224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절차(수정).hwp (8252 hit/ 94.5 KB) ↓

[미리보기](#)

목록

< 이전글

2022년 3월 사회복지시설 식단표 안내

다음글 >

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



# Yeosu Web Contents

